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- 95호

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창원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경조사용 화환의 조화 및 재사용 꽃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, 생화 중심의 신화환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신화환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.

○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추가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신화환의 정의 신설과 우수화원의 정의를 재정비함.(안 제2조)

나.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지원 내용을 정비 및 추가함.(안 제4조)

다. 우수화원 육성을 위해 지원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제1항제3호의2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(전화:055-225-5374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kimhk7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홍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

발의연월일 : 2026. 11. 18.

발 의 의 원 : 전홍표・권순재・김원일・류성국・문순규
박강우・박현재・변보미・서명일・성보빈
이무식・이우완・장병운・정은미・지상록
진형익・차중현・하경석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○ 경조사용 화환의 조화 및 재사용 꽃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, 생화 중심의 신화환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신화환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.

○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추가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화환의 정의 신설과 우수화원의 정의를 재정비함.(안 제2조)

나.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지원 내용을 정비 및 추가함.(안 제4조)

다. 우수화원 육성을 위해 지원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제1항제3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신・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 호

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두고”로, “지역화훼산업”을 “화훼산업”으로 한다.

4의2. “신화환(新花環)”이란 재사용하지 않은 생화만 사용한 화환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지역화훼산업”을 “화훼산업의”로,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해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화훼산업”을 “화훼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“지역화훼산업”을 각각 “화훼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의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화훼(이하 “지역생산화훼”라 한다)의 품질 향상 및 생산·유통기반 조성

2. 화훼의 생활화, 지역생산화훼 이용촉진 및 유통지원

6의2. 신품종 화훼 또는 소득작목 발굴·육성

6의3. 화훼농가와 화원 등 관련 사업자 간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체계 구축

제5조제1항 중 “시에서 생산한 화훼(이하 “지역생산 화훼”라 한다)”를 “지역

생산화훼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역 우수화원 육성)”을 “(우수화원 육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생산 화훼”를 “지역생산화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”을 “착한꽃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역생산 화훼”를 “지역생산화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신화환 제작에 필요한 물품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“지역화훼산업”이란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.	<삭 제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2. “신화환(新花環)”이란 재사용하지 않은 생화만 사용한 화환을 말한다.
5. “우수화원”이란 화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건전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화원을 말한다.	5. --------이란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두고 ---------- 화훼산업 ----------.
제3조(시장의 책무)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, 화훼 기술정보제공,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----- 화훼산업의 ---------- 시행해야 --.

제4조(사업지원)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사업지원) ---- 화훼산업 ----------.
1.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	1. 시의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화훼(이하 “지역생산화훼”라 한다)의 품질 향상 및 생산·유통기반 조성
2. 화훼의 생활화,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	2. 화훼의 생활화, 지역생산화훼 이용촉진 및 유통지원
3. 지역화훼산업 박람회	3. 화훼산업 --------
4.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	4. 화훼산업 ----------
5.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	5. 화훼산업 ----------
6.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	6. 화훼산업 ----------
<신 설>	6의2. 신품종 화훼 또는 소득작목 발굴·육성
<신 설>	6의3. 화훼농가와 화원 등 관련 사업자 간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체계 구축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소비촉진) ① 시장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신화환·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생산한 화훼(이하 “지역생산 화훼”	제5조(소비촉진) ① ---------- 지역생산화훼----------

라 한다)를 홍보하고 사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역 우수화원 육성) 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, 신화환·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 2.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 3. (생 략) <신 설>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6조(우수화원 육성) ① ---------- 지역생산화훼 ----------. 1. 착한꽃집---------- 2. 지역생산화훼 ----------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신화환 제작에 필요한 물품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참고 **관계 법령**

■ **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**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생산·유통체계 개선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, 생산자단체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2조(우수화원의 육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,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,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참고 **현행 조례**

■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시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화훼(花卉)”란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.
2. “화훼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3. “지역화훼산업”이란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.
4. “화훼문화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·발전되어온 유형·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
5. “우수화원”이란 화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건전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화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, 화훼기술정보제공,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지원)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
2. 화훼의 생활화,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
3. 지역화훼산업 박람회
4.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
5.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6.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
7.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소비촉진) ① 시장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신화환·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생산한 화훼(이하 “지역생산 화훼”라 한다)를 홍보하고 사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1. 14.>

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플라스틱 꽃 또는 플라스틱 꽃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11. 14.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
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

제6조(지역 우수화원 육성) 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, 신화환·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
2.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
3. 꽃 소비 마케팅,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